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1
------------	-----

제출년월일 : 1996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임대주택사업자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확대 및 일부 조문을 보완·정리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임대주택사업자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확대

- 공동주택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2월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m²이하에서 100m²이하로 확대하고,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9조 제1항)

○ 일부 조문의 보완 및 정리

- 1가구 1주택의 개념 정리 (안 제13조 제3항)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정리 (안 제14조)
-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범위의 정리 (안 제19조 제1항)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안 제25조)

□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 기타 참고 자료 : 별첨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자를 말한다)'를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고,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등의 사유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로 한다.

제13조 제2항 본문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2월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로 하고, 동항 단서 중 '취득일부터 2월(공동주택을'를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로 한다.

제13조 제3항중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인 가족이 1주택을'를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로 한다.

제14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중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등'이라 한다)가'를 '임대사업자(매

입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월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임대사업자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로 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로 하고, 동조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9조 제1항중 "사업으로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20조 제1항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된 세액이"를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된 세액이"를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이"로 한다.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